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0조제4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으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각 위원회의 기능)”을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한다.

4.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한다.

2.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보건업무”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업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을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뢰”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그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으로,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을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원 의뢰·통보 및 입원 신청”을 “의뢰·통보 및 신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치료보호)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자체 없이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

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중독자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전에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⑤ 제2항의 심의에서 해당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비용을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다”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것”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고 입원 조치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입원을”을 “치료보호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보고를”을 “제1항의 보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치료보호기간”을 “총 치료보호기간”으로,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제10조제2항의 심의”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을 “치료보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를 “제10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을 “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치료 보호한 경우에는”으로, “입원을 의뢰한 검사”를 “해당 검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퇴원 조치)”를 “(치료보호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퇴원 조치를 하여야”를 “치료보호를 종료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을”을 “치료보호의 종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부터”를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로, “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보호기관에서”를 “치료보호기관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